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0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송언석의원안)	3

I. 개요

1.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0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 (의제배당소득)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단서 신설> -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등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 (현행과 같음)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 (현행과 같음)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u>다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배당금은 제외</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 송언석의원안 2024. 10. 31. 발의(의안번호 5106)

-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적절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¹⁾ 제도로서 법인단계조정제도와 주주단계조정제도가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구 분	제 도	내 용
법인단계 조정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15조제2항제3호)	동업기업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손익 분배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에게만 과세하는 제도
	배당소득공제 (제5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명목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주주단계 조정제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에 더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이중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주주단계에서 재차

1)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에 대하여 독립과세론과 통합과세론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과세론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고 있음.

과세되지 않도록 수입배당금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라 30%, 80% 또는 10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법 제18조의2)]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한편, 「법인세법」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 'Reits')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배당소득공제 제도가 있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Reits 등과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²⁾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PFV는 과거 「법인세법」에 소득공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음.

소득공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2) PFV는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자금과 현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는 전문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도로·항만·철도·관광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음.

경우 그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임.⁴⁾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

3)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은 소득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을 전부 배당할 수 없음.

□ 개정안은 PFV 등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PFV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PFV는 「상법」에 따라 소득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해당 이익준비금은 PFV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짐.

그런데 PFV 해산 시 이익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청산배당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주주 단계에서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⁶⁾ 즉, PFV 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이익준비금이 배당을 받는 주주의 익금으로 다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5)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참고로, 배당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중⁷⁾ 유동화전문회사·Reits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소득을 전부 배당할 수 있음.⁸⁾ 이에 따라 배당액이 전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에서 공제되면,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PFV 간 이익준비금 적립여부 비교]

구분		이익준비금 적립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① 1.)	필요 없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등(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기업구조조정 Reits 등 (①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선박투자회사(① 5.)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55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① 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조특법」 제104조의31	PFV	필요	-

□ 다만, PFV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경

7)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중 제3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제7호(문화산업전문회사)는 PFV와 동일하게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의무 존재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우에 따라 PFV에 대한 과세우대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득의 일부를 배당하고 일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PFV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일부 소득은 법인세율의 누진세율(9%~24%) 중 19%가 적용되고, 대기업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최고세율 24%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함.

만약 개정안과 같이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적용된다면, PFV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추후 배당되어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⁹⁾

반면, 소득이 해당 PFV와 동일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소득을 전부 배당했을 때, 대기업 주주 단계에서 최고세율 24%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PFV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 사례 개요]

구분	소득 및 배당	과세	
		법인단계 과세	주주단계 과세
PFV	소득 100억원 중 90억원 배당, 10억원 이익준비금 적립 (해산 시 배당)	10억원 × 19%	90억원 × 24%
유동화 전문회사 등	소득 100억원 전부 배당	-	100억원 × 24%

주) 개정안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100%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가정

9) PFV에 대한 주주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정함.

이와 같은 사례에서 PFV는 소득의 일부분이 법인단계에서 저율로 과세되고 그 외 소득이 주주단계에서 고율로 과세되는 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소득 전액이 주주단계에서 고율로 과세되므로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비해 과세우대를 받는 결과가 발생함.

문 의 처
02)6788-5149